

제 210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9. 1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77
----------	------

2017. 9. 14.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7.8.23.
- 나. 회부일자 : 2017.9.1.
- 다. 상정일자 : 2017.9.6.

##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고재식 행정국장

나.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2014.8.7.)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8조에서 제10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해충돌가능성 배제를 위해 심의회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안 제1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안 제3조에서 제7조, 제9조 에서 제16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2017. 7. 3. ~ 7. 24.(결과 : 의견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여 개별 부서 부담경감 및 입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제7조 및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는 “구의회”로 개정하여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해충돌가능성 배제를 위해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기존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보다 구체화 함.

○ **종합 검토의견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규정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